

## 학교 내 괴롭힘 방지

안전한 교육 환경이란 모든 학생이 정서적, 학문적, 신체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위협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말합니다. 어떤 형태든 괴롭힘은 학교 내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앤도버 공립 학교는 괴롭힘이 없는 교육 및 근로 환경을 유지하려 최선을 다합니다. 앤도버 학교 위원회와 모든 앤도버 공립 학교들은 괴롭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정의:

“괴롭힘”이란 한명 이상의 학생 또는 교육자, 행정 직원, 학교 간호사, 식당 직원, 사서, 버스 운전사, 운동 코치, 특별 활동 지도자, 보조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이 행하는 문서상의, 구두의, 또는 전자 통신을 이용한 표현 또는 신체적 행위, 제스처로 인해 피해자에게 (i)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ii)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 하에 자신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느끼도록 하거나 (iii) 피해자에게 학교 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iv) 학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v)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정상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괴롭힘에는 사이버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괴롭힘”이란 테크놀로지나 전자 통신을 통해 사인, 시그널, 문서, 이미지, 소리, 데이터의 전달, 전자 메일, 인터넷 통신, 인스턴스 메시지, 팩스 통신 등을 포함한 와이어, 라디오, 전자, 사진 전자 또는 포토 일렉트릭 또는 소도 옵티칼 시스템에 의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송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이용한 괴롭힘을 말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또한 (i) 남의 신분을 훔쳐 웹페이지나 블로그를 제작하는 행위 (ii) 고의로 남을 사칭해 콘텐츠나 메시지를 게시하는 행위 (제작이나 사칭이 괴롭힘의 정의 (i) - (v)에서 언급된 상황을 초래할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또한 전자적 수단의 통신을 한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한명 이상의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전자적 미디어에 게시(전달이나 게시가 괴롭힘의 정의 (i) - (v)에서 언급된 상황을 초래할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문서에서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이는 위에서 정의된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 정책:

괴롭힘은 (i) 학교 캠퍼스 내, 학교 캠퍼스와 근접한 장소, 학교 캠퍼스 내외에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행사, 활동 또는 프로그램, 스쿨버스 정류장, 스쿨버스나 학교 또는 학구가 소유, 임대, 사용하는 다른 차량, 학교 또는 학구가 소유, 임대, 사용하는 전자 기기 (ii) 피해자에게 학교 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학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정상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장소, 활동, 행사, 프로그램 또는 학교 또는 학구가 소유, 임대, 사용하지 않는 테크놀로지 또는 전자 기기 상에서 금지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항목도 학교가 학교와 관련이 없는 활동, 행사, 프로그램에 교직원을 파견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괴롭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보복은 금지됩니다.

학구는 각 학년에 대해 학구나 학교의 교과과정에 연령에 맞는 괴롭힘 방지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과과정은 증거 중심이어야 합니다.

학구는 교사, 직원, 전문 지원 인력, 자원봉사자, 관리자, 지역 대표, 지역 법집행당국, 학생, 부모, 보호자와 상의하여 괴롭힘 방지와 중재를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계획은 학생 외에도 교육자, 관리자, 학교 간호사, 식당 직원, 사서, 버스 운전사, 운동 코치, 특별 활동 교사, 보조 교사 등을 포함한 교직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의할 내용에는 알림과 공개적 언급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적어도 1년에 두 번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i)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보복 금지에 대한 설명과 언급 (ii) 학생, 교직원, 부모, 보호자, 괴롭힘이나 보복을 신고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명확한 절차 (iii) 괴롭힘이나 보복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익명의 신고만으로는 처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을 명시하는 조항 (iv) 괴롭힘이나 보복 신고에 대해 즉각 응답하고 조사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 (v) 괴롭힘이나 보복 가해자에 대해 취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벌 조치(그러나 처벌 조치는 책임을 지게 할 목적과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함.) (vi) 피해자의 안도감을 회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 (vii) 괴롭힘을 신고하고 괴롭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괴롭힘과 보복에서 보호하기 위한 계획 (viii)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즉각 연락하기 위한 절차,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추가적인 괴롭힘이나 보복 행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알림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를 형법상 기소할 수 있는 경우 교장이나 교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이 하부 섹션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관할 법집행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제공해야 함.) (ix) 고의로 괴롭힘이나 보복에 대한 거짓 신고를 하는 학생은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 (x) 가해자와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상담이나 소개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모든 학생들이 법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관계 없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괴롭힘을 방지하고 파악하며 그에 반응하기 위해 교사, 관리자, 학교 간호사, 식당 직원, 사서, 버스 운전사, 운동 코치, 특별 활동 교사, 보조 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적 교육을 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같은 전문 교육에는 (i) 괴롭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으로 적절한 계획, (ii) 괴롭힘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계획, (iii)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 증인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와 파워의 차이에 대한 정보, (iv) 학교 환경에서 특히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괴롭힘에 대한 연구 결과, (v) 사이버 괴롭힘의 발생과 성격에 대한 정보, (vi)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인터넷 안전 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학구나 학교의 괴롭힘 방지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i) 부모와 보호자가 어떻게 가정에서 교과과정을 강화하고 학구나 학교의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지, (ii) 괴롭힘의 성격, (iii) 온라인 안전과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구는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령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 부모, 보호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관련된 학생이 연관된 계획의 섹션에 대해 1년에 한번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학구는 모든 교직원에게 1년에 한번 문서로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각 학교의 교직원들은 1년에 한번 학교에 적용되는 계획에 대해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직원의 의무에 대한 섹션은 직원의 핸드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학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각 학교의 교장이나 교장 직무 대행은 자신의 학교에서 계획의 실행과 감독에 책임을 집니다. 교사, 관리자, 학교 간호사, 비서, 식당 직원, 사서, 버스 운전자, 운동 코치, 특별 활동 교사, 보조 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은 목격하거나 알게 된 괴롭힘이나 보복 행위를 즉각 교장이나 계획에서 그같은 신고를 접수할 의무를 가진 학교 직원으로 명시된 사람, 또는 두사람 모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같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교장이나 대리인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학교 교장이나 대리인이 괴롭힘이나 보복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교장이나 대리인은 (i) 가해자에 대해 형사상 기소가 뒤따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법집행당국에 신고하고 (ii) 적절한 처벌 조치를 취하며 (iii) 가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iv)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며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괴롭힘이나 보복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괴롭힘이나 보복 사건에 한개 이상의 학구가 연관된 경우 괴롭힘이나 보복을 처음 신고받은 학구나 학교는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즉각 관련 학구나 학교의 담당자에게 알려 그들이 연령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괴롭힘이나 보복이 학교 구내에서 일어났고 학구에 더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고 더이상 학생도 아닌 21 세 미만의 사람이 관련된 경우 괴롭힘이나 보복을 신고받은 학구나 학교는 법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IES(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팀의 평가에서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장애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학생이 장애 때문에 괴롭힘, 희롱, 놀림에 취약하다고 판단된 경우 IEP는 괴롭힘, 희롱, 놀림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해당 능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조:**

MGL: 2010 년 규정 92 장

**인용:**

2010 년 8 월 17 일 학교 위원회 - 위원장 Dennis Fogue

2013 년 10 월 10 일 업데이트됨 - 위원장 Dennis Fogue

**교차 참조:**

AC, 차별 금지 ACAB, 성희롱  
JICFA-E, 신고식